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2023. 11.

교 육 부
(대 학 경 영 지 원 과)

차 례

Ⅰ. 사립대학 회계제도

1. 회계의 구분 및 특징 ····· 1
2.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 2
3. 회계처리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 5

Ⅱ. 사립대학 예산

1. 예산편성 및 제출일정 ····· 15
2. 예산편성의 원칙 및 내용 ····· 17
3.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 18
4. 예산집행 ····· 21
5. 예산공개 ····· 23

Ⅲ. 사립대학 결산

1. 결산제출 및 공개 ····· 24
2. 결산 관련 유의사항 ····· 26

Ⅳ. 사립대학 예 · 결산 주요 유의사항

1. 적립금 ····· 30
2. 이월금 ····· 33
3. 기부금 ····· 35
4. 기본재산 교환 및 용도변경 ····· 36
5.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 39
6.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 ····· 40

참고 1.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지적사항 ····· 42
2. 사학기관 예·결산 실태점검 지적사항 ····· 48
3.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명세서 ····· 53

[주요 개선 및 변경사항]

구분	현행	개선 또는 변경
용어변경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학교채 (p.11)	• 교비회계에서만 발행	• 교비회계, 법인회계 발행 가능
유동성장기부채 (p.11)	• 신설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장기차입금, 차관, 학교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p.12)	• 신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 사용 가능
예·결산 제출 일정 유연화 (p.16, p.25)	• 세부 절차별 이행 기한 규정	• 폐지
계속비이월 (p.33)	• 신설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일괄하여 정해놓은 경우로서 해당 연도 부담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기부금 (p.35)	• 법인회계에서 일반기부금 수령 불가	• 법인회계에서 일반기부금 수령 가능 • 단,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학교회계로만 세입 처리 가능
기본재산 교환 및 용도변경 (p.36)	• 신설	• 기본재산 교환시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종자산 또는 유의적 대가가 있었을 시는 공정가액으로 인식 • 기본재산 용도변경 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인식
건설중인 자산 (p.71)	• 건축물 공사기간 중의 공사비·설계비·인허가비·설계용역비 등의 지급액 (완공 후 해당 고정자산 과목으로 대체한다)	•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건설 관련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 (완공 후 해당 과목으로 대체한다)
자산재평가차액 (p.75)	• 임의적립금_재평가적립금	• 기본금조정_자산재평가차액으로 대체

Ⅰ 사립대학 회계 제도

1. 회계의 구분 및 특징

❑ 사립대학 회계 구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중략-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학교법인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

-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음
-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며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됨

※ 학교법인 회계 구조도 (산학협력단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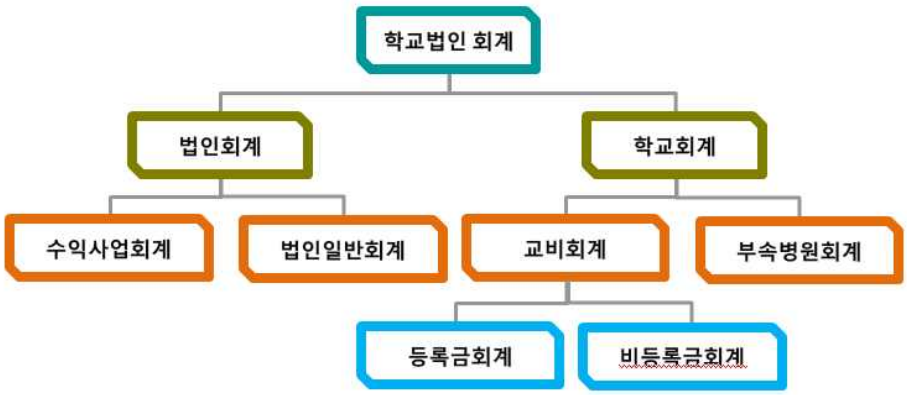

❑ 회계별 특징

○ 법인일반업무회계

- 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학교법인의 고유한 영역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단위가 법인일반업무회계임

○ 법인수익사업회계

- 학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구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인일반업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되는 회계

※ 수익사업의 규모가 작고 수입이 미미한 경우에는 법인일반업무회계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

○ 교비회계

-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교의 회계단위이며,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됨

○ 부속병원회계

- 의과대학교의 실습장으로 허가된 부속병원의 구분회계를 의미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4호)에 의하여 계리(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제3항)

2.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 회계원칙

○ **(복식부기)** 복식부기를 통해 자금 유·출입에 대하여 관리하며 정확한 손익 측정과 자산 및 부채 보고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자금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특례규칙」 제16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 **(자금계산서)**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 재무보고서

◦「특례규칙」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특례규칙」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①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재무상태표)** 학교법인 및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경제적 자원), 부채(경제적 의무), 기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태적 재무보고서

◦「특례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례규칙」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①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적립금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운영계산서)** 일정기간 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 재무보고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특례규칙」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①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 **(부속명세서)** 특례규칙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사용

◦**「특례규칙」 제40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① 재무상태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의2서식(1)에 의한 현금및예금명세서
2. 별지 제4호의2서식(2)에 의한 수표출납명세서
3. 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한 선급금명세서
4.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 가지급금명세서
5.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 선급법인세명세서
6. 별지 제4호의6서식에 의한 받을어음명세서
7. 별지 제4호의7서식(1)에 의한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8. 별지 제4호의7서식(2)에 의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8의2. 별지 제4호의7서식(3)에 따른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8의3. 별지 제4호의7서식(4)에 따른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9. 별지 제4호의8서식(1)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9의2. 별지 제4호의8서식(2)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10. 별지 제4호의9서식에 의한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11.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의한 미지급금명세서
12.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의한 가수금명세서

13. 별지 제4호의12서식(1)에 의한 지급어음명세서

14. 별지 제4호의12서식(2)에 의한 어음출납명세서

15. 별지 제4호의13서식에 의한 차관(외화장기차입금)명세서

16. 별지 제4호의14서식에 의한 학교채명세서

17.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17의2. 별지 제4호의16서식에 따른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18.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금명세서

2.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전입금명세서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액명세서

4.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결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모든 계정과목에 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예금 구분관리) 법인 및 대학의 예금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운영**되어야 하며, 대학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

※ 명확한 구분이란 예금계좌를 각 조직 및 회계단위 별로 구분하는 것

· 법인 및 대학의 예금은 법인 및 대학 명의로 각각 **구분 개설**되어야 하며, **해당 명의의 회계에 포함**되어야 함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금융계좌는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에 따라 구분 개설**되어야 함

· **(대학) 내부적으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금융계좌를 명확히 구분관리**하고 임의로 자금 대체 및 입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대학은 등록금 수납, 운영비의 지출, 생활관 수납, 학생식당 운영, 국고지원 수령, 외부연구비의 수령, 기금의 유치 등 수납 및 지출금원의 성격에 따라 금융계좌를 구분하여 사용·관리하여야 함

※「사립학교법」중 회계구분 및 관리에 대한 조항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부외계좌) 부외계좌 개설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 필요

- 부외계좌란 회계연도말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금융계좌로 법인 및 대학은 **신규 예금계좌 개설절차**를 **회계부서**만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부통제**를 **설계**하여야 하며

- 별도 부속기관의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중앙회계부서에서 통제하여 **부외계좌가 존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

○ 대학 기금 운용 및 투자관리 유의사항

▶ **(기금운용의 목적) 기금의 중장기 운용**은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통한 **대학지원의 장기적·안정적 운영**'과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

▶ **(기금운용의 기준)** 기금관리 주체는 **자금의 수급조건과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허용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되 안정성 및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특히 기금 투자 시,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분산투자 및 간접투자를 원칙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금 유·출입에 대한 분석과 예상손실 추정으로 적정수준의 유동성 자금확보 필요

※ 대학은 적립금 금융투자에 있어 전문성 및 금융투자 상품의 다양화 등 안정적 자산운용 방안 모색 필요

▶ **(기금운용의 체계)**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자금운용계획, 자금운용·관리 등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및 감독체계 마련**

※ 대학은 적립금(기금) 투자관리 지침서(자산운용규정)를 작성하여 학내 구성원 등에게 기금 자산의 운용원칙 및 방향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포

▶ **(투자자산 관리)** 학교법인 및 학교가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채권 등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할 시에는 **수익용기본재산(법인)** 또는 **적립금(법인, 학교)을 통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하되, 보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의 경우에도 기본재산 및 적립금의 투자·운용과 같이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수익용기본재산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 변경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 수리)를 득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

- 다만,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중도 매각)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유가증권도 최초 매입 이후 증권 계좌 예수금 범위 내에서 개별 금융투자 상품을 매입·매도하는 등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 중 가치가 안정적인 국채·지방채도 만기 도래 및 중도 매각 후 동일한 채권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종류의 국채·지방채를 매입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회사채 등은 제외)
- **(적립금 관리)** 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융상품을 유가증권으로 투자 시에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하며(「사립학교법」 제32조의3제1항), 투자 후 관련 적립금 투자 현황(취득가액, 평가액 등)을 이사회 사후 보고 하도록 함. 단, 관련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투자 현황 보고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 가능

○ 적정수준의 부채관리 및 자금운용 필요

▶ **(현황)**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등에 따라 시중은행 및 사학진흥기금에서 차입**하여 **재정확충 및 재정운용**

▶ **(문제점)** 철저한 관리계획 없는 **무분별한 차입금 활용**으로 **일부 법인(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

▶ **(부채관리 기본방향) 무분별한 차입을 지양하고, 자금운용 효율성과 사전분석을 통한 적정수준의 부채관리·활용**

- 기존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사학진흥기금 등) 대환·대출하여 상환부담 완화
- 신규 차입시 차입용도의 타당성 파악
- 자체적인 재정분석을 통한 상환능력 파악으로 적정한 대출기간·상환계획 도출

※ 철저한 부채관리 및 자금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자산손실 방지

- 동일규모의 대학과의 재정운영 비교분석을 통해 적정수준의 부채규모 파악

▶ **(기채차입)**

- 학교법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 차입할 수 있으며,
- 차입 시 명확한 차입사유, 상환방법 및 계획을 세워야 함

▶ **(차입 주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며, 학교장 명의의 차입은 불가

▶ **(상환재원)** 교비회계*, 법인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가능함

* 학교 교육목적에 직접 활용하는 차입의 경우에만 교비회계를 상환재원으로 정할 수 있음

▶ **(차입 사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용도 제한 없음)

▶ **(기채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금융기관(「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1호)을 우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른 기채처를 통한 차입 가능

❑ 입학전형료 반환

○ 입시수수료 수입

- 입시수수료 수입이란 입학원서대와 전형료 수입인 수험료로 구분되며, 원서 제출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수시모집, 정시모집, 학사편입 등과 관련하여 발생

○ 회계연도 내 입학전형료 반환

- 회계연도 내에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에서 반납처리

※ 수입금에서 개인별 반환처리, 예산 편성 등의 별도 작업 필요 없음

○ 회계연도 종료 후 입학전형료 반환

- 회계연도 말 입학전형 수입 및 지출 정산을 통해 산정된 반환 금액을 기타예수금으로 대체(수험료수입 차감처리)한 후 회계연도 이후 반환

○ 회계처리 예시(비등록금회계)

- 회계연도 내 입학전형료 수령시

<사례1> 입학전형료를 50,000원을 수령함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5,000원 포함되어 있음)

(차) 예금 50,000 (대) 수험료 50,000

- 회계연도 내 입시비용 발생시

<사례2>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5,000원이 발생함

(차) 입시경비 5,000 (대) 예금 5,000

- 회계연도 내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사례3>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전형료 30,000원을 반환하는 경우

(차) 수험료 30,000 (대) 예금 30,000

- 회계연도 말 입학전형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2월말 현재 미지급한 경우

<사례4> 2.25 ~ 2.27 기간 동안 발생한 입시용역비 150,000원을 3월 10일 지급한 경우 2월말 현재 회계처리

(차) 입시경비 150,000 (대) 미지급금 150,000

❑ 특정목적적립금 적립

○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 용도 이외에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 및 사용하여야 함

○ 회계처리 예시

- 특정목적적립금 적립 시

<사례1> 학생취업장려기금(특정목적기금)으로 받은 기부금 18,000,000원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

(차) 임의특정목적기금 (학생취업장려기금)	18,000,000	(대) 예금	18,000,000
(차) 제적립금대체액	18,000,000	(대) 임의특정목적적립금 (학생취업장려적립금)	18,000,000

- 특정목적적립금 사용 시

<사례2> 학생취업장려적립금(특정목적적립금)을 8,000,000원을 인출하여 학생지원비로 사용하기로 함

(차) 예금	8,000,000	(대) 임의특정목적기금 (학생취업장려기금)	8,000,000
(차) 임의특정목적적립금 (학생취업장려적립금)	8,000,000	(대) 운영차액대체액	8,000,000
(차) 학생지원비	8,000,000	(대) 예금	8,000,000

❑ 설립자기본금

○ 설립자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인해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설립자기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수입으로 회계처리 함

○ 설립자 및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자기본금이 증가한 경우 관련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설립자기본금은 감소시키지 않음

○ 회계처리 예시

- 출연재산으로 인해 기본재산이 증가한 경우

<사례1> 설립자가 출연한 예금 1,000,000원으로 수익용 토지를 취득

(차) 예금	1,000,000	(대) 설립자기본금	1,000,000
(차) 토지	1,000,000	(대) 예금	1,000,000

<사례2> 설립자가 출연한 예금 1,000,000원으로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교비회계에 전출

(차) 예금	1,000,000	(대) 설립자기본금	1,000,000
(차) 토지	1,000,000	(대) 예금	1,000,000
(차) 설치학교	1,000,000	(대) 토지	1,000,000

- 법인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설립자가 추가 출연하는 경우

<사례3> 설립자가 출연한 예금 1,000,000원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

(차) 예금	1,000,000	(대) 기부금수입	1,000,000
(차) 관리운영비	1,000,000	(대) 예금	1,000,000

- 설립자로부터 출연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사례4> 설립자가 출연한 토지(취득원가 1,000,000원)를 2,000,000원에 매각

(차) 예금	2,000,000	(대) 토지	1,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

※ 설립자기본금 관련 회계처리 없음

❑ 수익용 예금

○ 수익용 기본재산인 신탁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투자와 기타자산의 수익용 예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 회계처리 예시

- 수익용 예금 취득 시

<사례1> 설립자가 출연한 재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만기 6개월인 예금에 1,000,000원을 입금

(차) 예금	1,000,000	(대) 설립자기본금	1,000,000
(차) 수익용예금	1,000,000	(대) 예금	1,000,000

- 수익용 예금 인출 시

<사례2> 교육부 허가를 득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예금 1,000,000원 인출

(차) 예금	1,000,000	(대) 수익용예금	1,000,000

❑ 학교채

○ 학교채는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만기와 이자율을 정하여 학부모, 대학원생, 동문, 교원 등을 상대로 하여 발행한 채권을 의미함

○ 학교채 발행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써, 관할청 허가가 필요함

○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하는 경우 학교채발행차금을 인식하여야 함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학교채는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 재분류 함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으로 도래한 장기차입금, 차관도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 재분류하여야 함

○ 회계처리 예시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동일)

- 학교채 발행 시

<사례1> 교비회계에서 x1년 3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원, 표시이자율 10%, 매년 말 후급 조건의 학교채를 기대수익률 10%로 액면 발행(만기 3년), 학교채발행 관련 비용이 24,437원 발생한 경우

(차) 예금	1,000,000	(대) 학교채	1,000,000
(차) 지급수수료	24,437	(대) 예금	24,437

※ 학교채발행 관련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당해 비용 처리함

- 회계연도 말 이자비용 인식

<사례2> X1년도 회계연도 말 이자비용 인식

(차) 이자비용	100,000	(대) 예금	100,000

<사례3> X2년도 회계연도 말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비유동부채로 인식되어 있는 학교채 유동성 대체

(차) 이자비용	100,000	(대) 예금	100,000
(차) 학교채	1,000,000	(대) 유동성장기부채	1,000,000

- 만기 시 학교채 상환

<사례4> X3년도 회계연도말 만기시점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학교채 상환

(차) 이자비용	100,000	(대) 예금	100,000
(차) 유동성장기부채	1,000,000	(대) 예금	1,0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원칙 결산조정, 신고조정 선택 가능)

○ 각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 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

○ 회계처리 예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사례1> 수익사업 소득금액 1,000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는 경우

결산조정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비용)	1,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1,000
신고조정	(차) 운영차액(기본금)	1,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기본금)	1,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사례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00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결산조정	(차) 관련 비용(학교전출금 등)	500	(대) 예금	500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5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500
신고조정	(차) 관련 비용(학교전출금 등)	500	(대) 예금	500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기본금)	500	(대) 운영차액(기본금)	500
	※ 운영차액 처분 시 사용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시

<사례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으로 미사용하고 500원 환입

결산조정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5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500
신고조정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기본금)	500	(대) 운영차액(기본금)	500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미사용 또는 감소시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7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회계 고정자산 매입

○ 고정자산 매입지출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하나,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

○ 다만, 토지 매입 중에서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매각대금 한도), 기숙사 등 교육용건물 취득 시 건물의 대지, 캠퍼스 이전 계획(교육부 사전 승인)에 따른 토지 구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매입 가능

※ 이 경우 교육용 토지 대체취득 후, 잔액은 등록금회계에 속하며 교육비로 재투자

※ 기숙사 신축, 학교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회계로부터 토지매입비, 건물 매입비, 구축물 매입비, 건설가계정 지출의 합계액이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총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 계약의 원칙

○ 예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 계약금액이 3천만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함(「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

○ 계약금액이 3천만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3.1.3. 개정 시행)**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Ⅱ 사립대학 예산제도

1. 예산편성 및 제출일정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④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특례규칙」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예산안 편성 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특례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예산편성

○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예산은 대학의 운영목표와 기본방침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정을 마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확정

- 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절차 준수

○ 특례규칙 개정·시행('23.6.1.)에 따라 예·결산서를 제출하기 전 이행 기한은 삭제되었으나, 교육부에 제출하는 최종기한*은 준수하여야 함

* (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결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및 제31조 제3항)

- 구성 :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구성단위가 전체의 50% 미만이 되도록하여야 하며, 학생위원의 수는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권한 :

①등록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금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연도의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고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②예/결산 :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함.

❑ 예산편성절차 및 제출일정

【 예산편성과 제출일정(회계기간 3.1~2.28) 】

구 분		기 관	관계법령(등)
법인회계	예산편성 요령 결정	이 사 장	특례규칙 제4조 제1항
	예산(안) 이사회 제출	이 사 장	특례규칙 제6조 제1항
	학교의 전출금등 내역통지	이사장이 학교의 장에게	특례규칙 제6조 제1항
	예산(안) 심의·확정	이 사 회	특례규칙 제6조 제2항
	심의·확정된 예산을 공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이 사 장	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제1항
	법인·학교예산 교육부에 제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이 사 장	특례규칙 제6조 제3항
학교회계	학교장이 예산편성요령 결정	학교의 장	특례규칙 제4조 제1항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후 예산(안) 이사회 제출	학교의 장,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법 제29조 제4항 특례규칙 제6조 제1항
	예산(안) 심의·확정	이 사 회	특례규칙 제6조 제2항
	심의·확정된 예산을 공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학교의 장	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법인·학교예산 교육부에 제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이 사 장	특례규칙 제6조 제3항

【 예산 제출일정 구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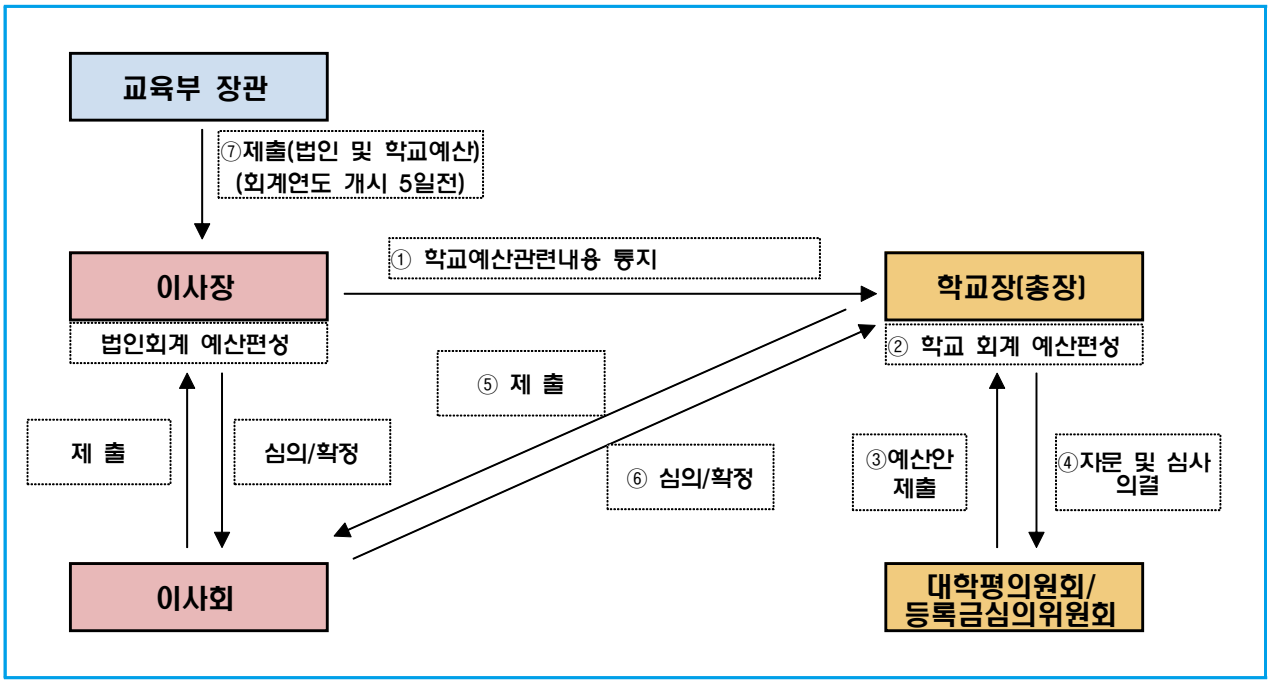

2. 예산편성의 원칙 및 내용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특례규칙**」 **제9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특례규칙**」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예산총계주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항목에 편성해야 함**

- **예산총칙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금예산서라는 형태로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예산**을 설정
-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 불가**

※ 평생교육원, 어학센터, 기숙사 등 비등록금회계에서 수입을 계상하는 특별회계는 지출도 비등록금회계에서 예산 편성하며 특별회계 전입·전출금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예산편성

※ 준예산과 추가경정예산
○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시점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필수적인 지출항목*들의 경우에는 전년도 지출예산을 근거로 집행 (특례규칙 제7조)
*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 **(추가경정예산)** 추경예산도 일반적인 예산편성절차를 거쳐 확정하며, 변경예산이 확정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 예산 제출 (특례규칙 제8조)
※ 예비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9조)
○ 자금예산 수립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의 결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예비비의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적정규모의 예비비 책정이 바람직함
<참고 : 국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 국가재정법 제22조>

3.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 일반사항

○ **(회계구분)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 **등록금회계는 등록금 재원을 수입으로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계정과목(교육외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비등록금회계는 등록금 외 재원을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 **(합리적 예산편성) 전년도 추정결산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

-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정확한 수입추계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한 수입·지출예산 편성으로 수입 예상액 축소 편성 및 지출 과다 편성 지양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물론,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재원 조달 방안, 문제점 및 대책, 투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

○ **(예산편성 절차 준수) 예산편성의 사전통제 및 조정기능 강화**

-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내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

【 대학 예산편성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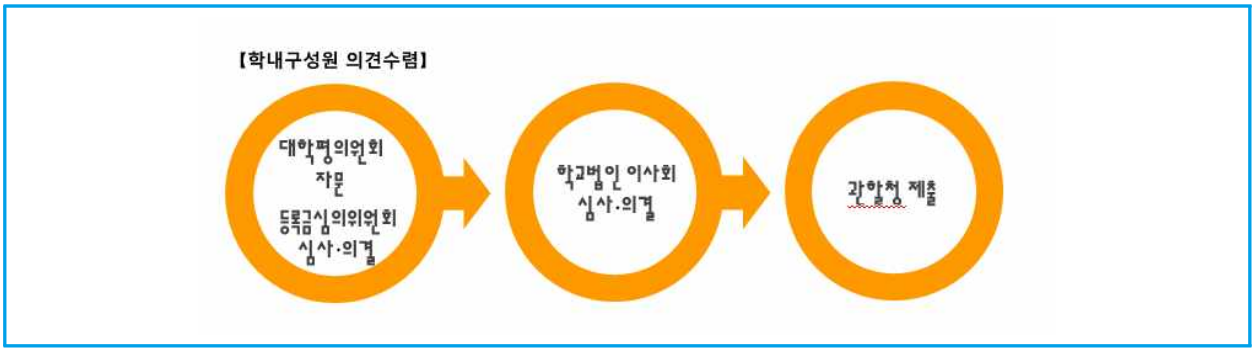

○ **재원의 적정배분을 통한 예산편성**

- **소모성 경비 억제 등 재원의 적정배분**을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화
- 대규모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한 재정악화 방지**

○ **과거연도 결산 결과 환류**

- 법인감사 및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조치

❑ 수입 예산편성 유의사항

○ **등록금**

- 교육여건 개선 계획,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등록금 책정**
- **이월금 및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전년수준의 등록금** 유지

○ **입학금**

-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19.12.3 신설)에 의거,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음

  * 동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

○ **전입금 및 기부금**

- 법인 전입금의 증대로 **대학교육에 대한 학교법인의 기여 확대**

○ **국고보조금수입**

-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할 대학은 예산총칙에 협약 내용을 사전에 반영하여 명시할 것

【 예산총칙 예시 】

예 산 총 칙

제1조 자금예산의 규모 : ××학년도 자금예산서 규모는 교비회계 세입·세출 각각 일금 OO천원으로 한다.
가. 등록금회계 세입·세출 각각 일금 OO천원
나. 비등록금회계 세입·세출 각각 일금 OO천원
제2조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가.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투명성제고
나. 예산절감 및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의 효율화
다.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성
라. 대학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예산편성
제3조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가. 대학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유학생 유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나. 경험중심 교육혁신, IT교육강화
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구 분야 발전에 역점
제4조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 장기차입금 및 학교채 한도는 유동성장기부채를 포함 OO로 한다.
제5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 일시차입금의 한도는 OO로 한다.
제6조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에 참여하며, 책무 이행 및 반환 등의 기준은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조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동일 관내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음
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및 예산초과지출 항목 발생 시 충당한다.

○ **차입금**

-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적립금을 우선 사용하여 불필요한 차입금 계상 지양
- 과도한 차입을 통한 대규모 시설투자 차입예산 편성 억제

○ **기부금**

- 기부금 수령 시 기부약정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부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8의2호)

  * 학교운영비, 학교시설 개선비, 학생 장학금 등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당해회계연도 가결산** 및 **교내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하여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추정액을 **수입예산에 반드시 반영**

❑ **지출 예산편성 유의사항**

○ **인건비**

- 지급 근거 없는 인건비성 경비 지급 금지, 인건비의 과도한 인상 지양
- 내부규정과 이사회 의결 및 예산편성 절차 없이 인건비성 경비 지급 금지

○ **관리운영비**

- 소요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 편성 시 투명성과 적절성 제고
-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는 과다 편성 지양
-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업무추진비,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해당 과목에 편성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3)

○ **연구 · 학생경비**

- 연구역량 제고 및 학생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예산 증액

○ **적립금**

- 적립금 중장기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가급적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
-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내**에서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만 적립 가능

  ※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한 건축 적립 목적 적립금은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

  * 학교시설에 부속된 냉난방기 교체의 경우, 개보수에 해당하여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 적립금은 **비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하여 목적별로 관리·운영하되, 가급적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구 및 장학적립금으로 우선 적립**
- 투자계획 수립 및 적기 투자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
-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 불가 (기타적립금 폐지, '17회계연도부터 시행)

○ **시간강사 퇴직금**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강사(두 개 학기 모두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은 교원퇴직금으로 예산 편성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및 교직원 퇴직수당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사립학교법」 제32조의4 및 이월금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이월금 최소화** 노력

4. 예산집행

◦**「특례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분리

○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분리하여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으며, 추경예산 절차 없이 기존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단,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함

※ 목적외 사용사례 : 당초 예산편성목적과 다르게 집행, 실험실습에 필요한 재료구입 예산을 운영비에 사용, 인건비성 수당을 연구비로 집행

❑ 예산의 전용

○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 후,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예산총칙에서 예산의 전용을 제한하는 과목과 예산 성립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음

❑ 예산집행 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 **(집행절차)** 집행 품의 및 결재 → 지출원인행위 → 지급명령 → 지급

○ **(관련규정)**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 시 관련규정 준수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60조

※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시 유관업체 선정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관리 철저

❑ 자금관리의 철저

○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예치 관리(「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

*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자금을 별도 구분 관리

○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 금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수입을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

○ 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

❑ 업무추진비 등 기타비용 집행 시 유의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집행 내역을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하게 기록

○ 업무추진비로 급여성 월정액 지급 금지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의 집행은 불가하며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지출 금지

○ 지출은 내부품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선 현금 지급 후 사후정산 방식을 지양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

5. 예산 공개

❑ 예산 공개

○ 당해 회계연도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법인 회계(법인일반회계・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전부 공개

○ 공개범위는 **예산과목의 "목"까지 공개**하며,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서 공개

○ 홈페이지 및 비치・열람 공개 시 예・결산서 원본을 탑재・비치, 열람 제한 금지, 탑재된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

【 예산 공개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Ⅲ 사립대학 결산제도

1. 결산제출 및 공개

❑ 결산제출 관련

○ **(제출서류)** 결산 제출공문(학교법인 이사장 명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결산 부속서류(합산재무제표 포함),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 결산 제출 및 공개보고 서식

【 결산 부속서류 】

(회의록)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사본,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부속명세서) 합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 등

【 결산 제출서류 관련 법령 】

◦**「특례규칙」 제39조(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자금계산서
2. 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
5. 결산 부속서류

◦**「특례규칙」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4. 합산재무제표
5.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제출일정)

【 결산일정(회계기간 3.1~2.28)】

구분	기관	관계법령(등)
결산서 작성(감사보고서 첨부) 법인 이사회 제출	이사장 학교의장	특례규칙 제42조제1항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사립학교법 31조제3항
결산 심의·확정	이사회	특례규칙 제42조제2항
법인·학교 결산서 교육부에 제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사장	특례규칙 제42조제3항
심의·확정된 결산 공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사장 학교의장	사립학교법 31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제1항

【 결산 제출일정 관련 법령 】

◦**「특례규칙」 제42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결산 공개

○ 당해 회계연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법인 회계(법인일반회계·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전부 공개**

○ 홈페이지 및 비치·열람 공개 시 예·결산서 원본을 탑재·비치, 열람 제한 금지, 탑재된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

※ 결산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외부감사보고서 전문 공개

【 결산 공개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및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결산 관련 유의사항

❑ 결산서(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함

○ 결산 부속서류로 합산재무제표*(특례규칙 별지 제7호서식)도 제출

* 법인의 일반회계와 설치 운영 중인 모든 대학의 교비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재무제표 작성

○ 교비회계의 경우, 교비회계(통합) 및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작성

-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로 인한 취득원가와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재무상태표 상 기본금 조정항목으로 표시

❑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구분

○ **수입인식의 적정성**

- **등록금회계의 수입**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등록금 수입으로 한정**

* 고정자산 매각수입, 잡수입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입

- 수강료 수입을 포함한 그 외 수입들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인식

○ **지출인식의 적정성과 회계 간 거래**

- **(등록금회계전입금)** '건축적립금 적립액'(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차입금 상환액'을 등록금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경우

- **(기본금조정)**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구입 한 고정자산이 등록금회계에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금회계로 전출하는 자산가액

회계 구분		자산 전출(또는 전입) 시 회계 처리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차입원리금, 건축적립액)	등록금회계	차변) 비등록금회계전출금(전출금) xxx 대변) 현금(예금) xxx
	비등록금회계	차변) 현금(예금) xxx 대변) 등록금회계전입금(전입및기부수입) xxx
비등록금회계⇒등록금회계 (고정자산)	등록금회계	차변) 자산 xxx 대변) 비등록금회계(기본금조정) xxx
	비등록금회계	차변) 등록금회계(투자와기타자산) xxx 대변) 자산 xxx

❑ 특별회계 및 교내 수입·지출 교비회계 합산

○ **특별회계**[1)]로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 평생교육원, 연구소, 학교기업 등의 **모든 수입·지출은 예・결산시 반드시 교비회계에 포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5조(예산총계주의)에 따라 평생교육원 등록금 및 운영경비 등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회계의 모든 수입・지출을 반드시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교육 관련 해당계정의 수입·지출 항목에 계상
- 특별회계의 자산, 부채 및 기본금 계정은 특례규칙 계정을 사용

○ 회계 간 전입·전출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수입 구분

○ 국고보조금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지원기관이 어디인지에 근거하여 계정과목을 적용**하여야 하며, 상기 지원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기부금수입**으로 처리

※ 다만, 정부출연기관 지원금은 소관부처의 지원금을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구재단 및 장학재단 등의 지원금은 교육부 보조금'**으로 처리

※ 예외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 재원이 **일반기업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은 기부금수입으로 처리** (예시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 국고보조금수입 구분 】

구분		해 설
교육부	국가장학금	교육부로 지원받는 보조금 중 국가장학금 예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장학금 명목의 지원금
	기타지원금	교육부로 지원받는 보조금 중 기타지원금 예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및 기타지원 목적의 지원금
기타국고지원(타기관)		교육부 외 기타 정부 부처로부터 받는 보조금 예시) 산업통상자원부지원금, 국방부지원금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예시) 시·도 보조금수입 등

1) 특별회계 : 「사립학교법」 또는 「특례규칙」에 의한 회계단위가 아니라 대학교의 자체 회계 관리 차원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단위

❑ 사학기관 외부감사보고서(「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은 지정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결산 외부감사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④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1. 8. 10.>

○ 결산 시, 학교법인(학교 포함) 담당자는 감사 유의사항에서 열거한 중요한 재무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4호의 서식('23.6.1.개정·시행)'을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동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 사항으로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무제표 주석 사항은 재무제표의 일부로 그 작성 책임은 학교법인(학교 포함)에 있음

【 (서식 4) 중요한 재무정보('23.6.1.개정·시행) 】

구분	내 역
· 법인일반 업무회계	1. 예금 보유 현황 : 예금의 용도 및 예금종류, 금액, 사용제한 사항 등 2. 투자유가증권 보유 현황 : 종목, 보유목적(또는 취득사유), 주당가액, 주수, 취득가액 및 공정가액 등 3.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 현황 : 유형자산 별 장부금액의 증감내역, 사용수익권, 장부가액, 사용제한 사항 등

구분	내 역
· 법인수익 사업회계 · 교비회계 · 부속병원 회계	4. 차입금 현황 : 관할청 허가 여부 및 차입처, 용도, 차입액, 차입금 증감 내역, 차입일, 상환일, 이자율, 상환회계 등 5.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감내역 6. 적립금 현황 : 적립금 구분별 증감 내역 및 적립재원, 사용내역 등 7. 계류중인 소송사건 : 계류법원, 원고 및 피고명, 사건내역, 소송가액, 진행상황 등 8. 특수관계자 현황 및 특수관계자 거래 9.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일 후(결산 이후) 발생한 중요 재무사항 10. 대손상각 내역 : 관련 계정 및 대손상각액, 거래처 등 11. 법원 판결에 의한 중요한 손해배상금 및 관계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된 중대한 과태료 및 벌과금 등 납부 실태 1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학교운영경비부담률 법령 기준 준수 현황 13.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 우발자산과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현황 14. 기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

Ⅳ 사립대학 예 · 결산 주요 유의사항

1. 적립금

❑ 적립금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함
-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
-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

○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적립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 지양**

※ 「사립학교법」(제32조의2)개정('16.12.27) :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적립할 때는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도록 '기타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변경함

○ 등록금회계로부터의 비등록금회계로의 적립금 적립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내에서 건축적립금으로만 적립가능**

※ 건축적립금 목적으로 전출하는 적립금을 당해연도 감가상각 상당액 보다 적은 금액을 전출한 후, 당해연도 미지급금 계상 등을 통해 차년도에 전출 할 수 없음

※ 건축적립금(등록금재원으로 적립)은 유가증권 투자 또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별도 구분 관리(「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

○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동인출된 기금을 **적립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을 변경할 경우 예산변경절차에 따라 변경

※ 기금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각 심의·의결기구별로 단독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23회계연도 적립금 운용 시~)

※ 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 간 변경은 예산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하되, 예·결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음

○ 기금의 이자수입(선급법인세 포함) 또한 해당 적립금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일정 한도 내 증권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 **적립금의 1/2한도에서** 가능하고,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금액은 취득이 불가**(「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

※ 무분별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금 투자지침서를 마련**하고 **자금운용규정과 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으로 운영**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7(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설치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적립금)의 관리·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을 시 각각 별도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과 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음

② **구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이 위원장* 포함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교원, 직원 및 학생 각 2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위원장 : (대학교육기관) 대학교육기관의 장 / (학교법인) 이사장

③ **운영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

○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 사용 가능(「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4항)

○ 학교법인 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회계, 학교 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교비회계에서 회계 처리해야 함

2. 이월금

❑ 이월금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무·회계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이월금 최소화)**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에 따라 예산편성 시 미사용차기 이월자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계속비이월)** 법인회계와 비등록금회계에서는 적립금으로 적립 후 사용 가능함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만 계상**

○ **이월금 종류 및 예시**

【 이월금 종류 및 구분 】

구 분	의 미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계속비이월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일괄하여 정해놓은 경우로서 해당 연도 부담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기타이월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

<계속비이월 설정 방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사업의 소요경비를 계속비의 형태로 지출하기로 사전에 정하고, **계속비가 지출되는 첫 회계연도의 학교법인 및 학교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시 계속비 편성에 대한 의결을 받아 계속비이월 자금을 편성**해야 하며, 계속비 편성 기간은 첫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필요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별지 제47호 및 제48호 서식 활용 가능

【 이월금 구분(예시) 】

구분	계정과목	예시
명시이월 (A)	현금 및 예금	1. 현금 및 예금으로 보유하는 임대보증금 2. 국고사업비 잔액 3. 계획변경(기간 지연, 사업지연, 절차지연 등) 및 비용 집행지연에 따른 이월액 4. 장학금 미집행액(차년도 장학금지급시) 5. 퇴직금 지급 예상액 6. 기타 명시이월
	선급법인세	적립금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로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타유동자산	소송관련 공탁금 등 사용이 제한되는 금액 등
사고이월 (B)	현금 및 예금	계약 또는 기타원인행위가 연도내 존재하였으나 용역제공 미완료 혹은 제품의 미검수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당해연도 내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
	선급금	계약 또는 기타원인행위가 연도 내 존재하였으나 용역제공 미완료 혹은 제품의 미검수에 따라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계속비이월(C)	현금 및 예금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소요경비의 총액에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기타이월 (D)	현금 및 예금 (유동부채 차감 후 순액)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이 아닌 현금 및 예금(유동부채 차감)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선급법인세	명시·사고이월이 아닌 선급법인세
	기타유동자산	명시·사고이월이 아닌 기타유동자산
미사용차기이월자금(A+B+C+D)		**유동자산 - 유동부채**

3. 기부금

○ 기부금 수입은 기부자가 지정한 기부금의 사용용도, 기부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됨. 기부자가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이 되며, 사용용도가 지정되면 지정기부금으로 구분.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목적으로 수령한 기부금은 연구기부금으로 구분함

○ **법인회계**에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기부금* 수령 가능**('23.6.1. 시행) 하지만,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사용·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 일반기부금 수입으로 세입처리**하여야 함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사용·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관련>

Q1.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업체, 교내 영업장 유지, 등록금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교내 건물에 은행지점, ATM 기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은 은행 등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경우 세입 처리해야 하는 회계는 어느 회계인가요?

☞ 학교회계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일반기부금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함

<학교에서 수령하여야 할 기부금을 학교법인에서 수령한 경우>

Q2. 기부자가 목적을 정하지 않고 학교를 기부처로 기부하였으나 학교법인에서 수령 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비등록금회계에서 세입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학교법인에서 수령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에서 기타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교비회계로 보전하면서 비등록금회계에서 일반기부금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함

☞ 특히, 법인회계에서 일반기부금으로 세입처리하고 비등록금회계로 보전하면서 경상비전출금 또는 법정부담금전출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회계 구분		전출(또는 전입) 시 회계 처리
학교를 기부처로 하는 기부금을 법인회계에서 수령	법인회계	차변) 현금(예금) xxx 대변) 기타예수금 xxx
법인회계⇒비등록금회계	법인회계	차변) 기타예수금 xxx 대변) 현금(예금) xxx
	비등록금회계	차변) 현금(예금) xxx 대변) 일반기부금 xxx

4. 기본재산 교환 및 용도변경

❑ 기본재산 교환

○ **동일가액 재산의 교환**

- 유사한 동종의 유형 고정자산을 상호 적정한 교환조건으로 바꾸는 것으로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 함

※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은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교환차액이 있는 재산의 교환**

- 기본재산 교환 시 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액 등 재산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면 차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수반**되며 해당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함

<학교법인과 교비회계가 기본재산을 교환한 경우>

Q1. **(동일가액 재산 교환)** 학교 법인회계에서 사용하는 토지A(취득가액 100,000천원/ 공정가치 150,000천원)를 교비회계에서 사용하는 토지B(취득가액 130,000천원/ 공정가치 150,000천원)와 교환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구분	법인회계		교비회계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장부가액 인식 (동종자산)	토지B 100,000	토지A 100,000	토지A 130,000	토지B 130,000

Q2. **(교환차액이 있는 재산 교환)** 학교 법인회계에서 사용하는 토지A(취득가액 100,000천원/ 공정가치 300,000천원)를 교비회계에서 사용하는 토지B(취득가액 130,000천원/ 공정가치 500,000천원)와 교환하는 경우 회계처리는?(공정가치 차액(200,000천원) 만큼 교비회계 예금 전출)

구분	법인회계		교비회계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공정가치 인식 (이종자산 또는 유의적 차이 존재)	토지B 500,000	토지A 100,000 예금 20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200,000	토지A 300,000 예금 200,000	토지B 13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370,000

❑ 기본재산 용도변경

○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①학교의 교지·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교지·교사 확보율에 영향을 못 미치고, ②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관련 기준**

- **(용도변경 목적)** 교육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 후 수익을 창출하여 학교에 재정적으로 기여

※ 용도변경 후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낮은 재산인 경우 보다 수익성 높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 권장

- **(보전 조치)**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교비회계 보전은 불필요하며, 보전조치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비회계로 보전하여야 함

* 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 등

- **(구성원의 동의)** 용도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학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대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학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법인계정을 차감("기본금_출연기본금_법인"에 "법인 출연액 차감"세목으로 구분하여 표시)

※ 학교법인은 제공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설치학교 계정 차감("투자와기타자산_설치학교"에 "설치학교 투자액 차감" 세목으로 구분하여 표시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 용도변경>

Q1.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사용하던 건물(취득가액 100,000천원 / 감가상각누계액 25,000천원 / 시가 90,000천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회계 구분		전출(또는 전입) 시 회계 처리
교육용 기본재산 제거 (장부가액)	교비회계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25,000 법인_법인 출연액 차감 75,000 대변) 건물 100,000
수익용 기본재산 인식 (장부가액)	법인회계	차변) 건물 1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25,000 설치학교(대학 등)_설치학교 투자액 차감 75,000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교사 신축, 실습지 운영 등)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함

※ 용도변경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가액만큼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필요

- 학교법인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만큼 설치학교 계정을 계상함

<수익용기본재산에서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Q1. 학교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사용하던 건물(취득가액 100,000천원 / 감가상각누계액 25,000천원 / 시가 90,000천원)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회계 구분		전출(또는 전입) 시 회계 처리
수익용 기본재산 제거 (장부가액)	법인회계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25,000 설치학교(대학 등) 75,000 대변) 건물 100,000
교육용 기본재산 인식 (장부가액)	교비회계	차변) 건물 1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25,000 법인 75,000

○ 기본재산 간 대체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사용으로 보았던 자산을 다시 수익사업으로 전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 처분일(교환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처분이익이 과세 될 수 있음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관련 판례」 법인, 조심2013서1499**

[제 목]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 지]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것에 대하여 그 전입일 현재 부동산의 평가이익을 수익사업에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을 보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이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결산조정사항으로 보이며,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는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의 지출은 단순한 회계의 이전이 아닌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쟁점평가증액을 수익사업의 이익으로 인식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이연을 적법하게 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손금처리하고 기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이중 손금처리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평가증액 상당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산입(처분이익 의제)되어야 할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동일 학교법인내 개별 학교간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교환>

▶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재산**을 **해당 재산의 원래 사용 주체였던 학교의 교비회계로 보전**하여야 함

- 단, ①해당 재산의 원래 사용 주체였던 학교가 해당 재산을 교육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있고, ②용도변경 후 다른 학교가 해당 재산을 교육목적에 활용 가능한 경우, ③두 학교의 학교장이 모두 동의하고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반대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할 수 있음

※ 용도변경의 주체인 학교 중 고등학교 이하 학교도 포함된 경우, 학교의 관할청(교육청)의 동의 의견도 필요

▶ 동일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부속병원 간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회계처리) 동종의 유형 고정자산**을 상호 교환 시 교환에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하며, **교환차액이 있는 재산 교환 시** 해당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함

5. 사학연금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포함)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

- **(학교부담 승인)** 학교법인은 승인된 최소 부담액 이상을 전출하여야 하고, 학교부담 시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부담. 또한 결산 이후 법인의 추가 부담여력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 전출

※ 학교부담 승인 미신청 법인 또는 신청을 하였으나 미승인 된 법인은 법인부담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전출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액의 부당지출 보전을 위한 교비회계 전출 시 '잡손실'로 처리하여 당해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액과 구별되도록 함

- **(재정여건개선계획)**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제고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 **법정부담금 계정과목 세분화 입력**

- 법정부담금 계정을 세분화하여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법정부담금 계정과목 세분화 】

교원 법정부담금	① 사학연금 부담금 ② 국민연금 부담금 ③ 건강보험 부담금 ④ 산재·고용보험 부담금 ⑤퇴직수당
직원 법정부담금	⑥ 사학연금 부담금 ⑦ 국민연금 부담금 ⑧ 건강보험 부담금 ⑨ 산재·고용보험 부담금 ⑩퇴직수당

※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강사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교원퇴직금으로 편성(「고등교육법」 제14조의2)

6.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판례의 사례)

○ **(집행원칙)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 **(집행예시)**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 교원의 임용권한이 이사회에 있는데도 교비에서 집행한 경우의 '판례' <아래 참조>

◦「**관련 판례**」

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참조),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2.26.,선고, 2014도15182 판결)

② **○○학원 정관**은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과 승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대 교원의 임면권을 △△대 총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학원에 있고 그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도 명실공히 ○○학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송비용 역시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도11281)

◦「**법률 자문**」

① (A법무법인) **학교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학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임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학교법인이 집행하여야 할 경비(인사 관련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음

② (B법무법인) **학교의 장 권한으로 수행된 교육시설 건축계약, 입학자격 제한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업무 역시 학교업무**에 속하므로 이는 **법인회계에서 보다는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그 비용의 성격에 부합**함

③ (C법무법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이나, 총장 등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음

참고 1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지적사항

❑ 재무제표 관련 감리 주요 지적사항

(재무제표 오류)

1. 결산 절차 미흡

○ 학교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수익사업회계 재무제표와 다른 재무제표를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함

○ 학교법인은 법인일반회계와 교비회계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시하였으며, 감사보고서를 누락하여 공시함

○ 학교법인은 자금계산서 및 합산자금계산서를 전기와의 비교 공시가 아닌 당기의 자금계산서만 작성하여 공시하였음

○ 학교는 비등록금회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별회계를 누락 하였음

○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작성 시 이월자금의 성격에 따라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타이월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에서 미사용차기 이월자금이 발생하였으나, 미사용차기이월자금명세서 상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타이월의 구분을 누락함

2. 내부거래 미 제거

○ 학교는 비등록금회계와 등록금회계 간의 내부거래(연말정산 환급금 정산 등)을 제거하지 않아, 교비회계의 미수·미지급금이 과대계상되어 있음

○ 학교법인은 합산자금계산서 작성 시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상비 전·출입금과 법정부담전·출입금을 제거하지 않아, 동 금액만큼 자금계산서 수입·지출이 과대계상되어 있음

3. 회계구분 오류

○ 학교법인은 교육용기본재산을 교비회계의 토지 및 건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일반회계의 토지 및 건물로 계상함

○ 학교는 생활관의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전기·수도료) 등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나,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였음

(자 산)

1. 자산 취득 계상 오류

○ 자산의 취득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 중인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건설가계정에서 건물로 대체하지 않음

○ 학교법인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자산성이 없는 설계 용역비 등을 건설가계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학교법인은 설치학교인 초·중·고교에 시설 건축 목적으로 지출되는 사항은 설치학교로 회계처리하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비전출금으로 처리하여 해당 전출금을 과대계상하고 설치학교를 과소계상함

○ 학교법인은 자본적지출(건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승강기 설치비용을 수익적지출(건축물관리비)로 계상하여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고 건축물관리비를 과대계상함

2. 계정 분류 오류

○ 학교법인은 수익용예금(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수익용기본재산 정기예금을 특정목적기금으로 계정분류함에 따라 수익용예금, 운영차액을 과소계상하고 특정목적기금 및 특정목적적립금을 동액만큼 과대 계상함

○ 학교는 비등록금회계에서 교직원 복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기타자산이 아닌 임차보증금으로 분류하였음

○ 학교는 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잡손실 처리하였으나,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함

○ 학교법인은 특정금전신탁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을 구성하는 금융상품을 확인하여,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수익용예금 및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수익용예금으로 계상함

3. 자산 평가 오류

○ 학교는 장기 미회수채권(임대료 미수금)에 대한 손상 인식을 수행하지 않음.

○ 학교법인은 직접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없이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자산 및 기본금조정을 과소계상함

○ 학교는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정자산 37건을 이사회 승인없이 폐기함.

○ 학교법인은 수익사업회계에서 기타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현재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손상 차액을 인식하지 아니함

4. 부외자산 존재

○ 학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2개의 보통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 예금을 과소 계상하였음

(부 채)

1. 확정 부채 미 계상

○ 학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29.자로 퇴직한 사학연금가입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과 사학연금 미가입자(교원 3인, 직원 2인)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금 계상하지 아니함

○ 학교는 건물 1차 중도금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계약서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료 및 미지급금을 인식하지 아니함

○ 학교는 소송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확정된 구상채권 반환금, 대위변제 채권금액, 토지매매대금 반환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을 추정치로 과소 계상함

○ 학교법인은 교육부 감사처분에 따른 교비로 전출하여야 할 교사사용료에 대한 미이행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일 현재 해당 금액에 대해 미지급금 계상을 누락함

2. 계정 분류 오류

○ 학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을 퇴직급여가 아닌 예금 및 예수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예금 및 예수금을 과대계상함

3. 유동성 분류 오류

○ 학교법인은 차입금 중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에 대해 유동성대체를 하지 않고 고정부채인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수 익)

○ 학교는 기부금을 수취한 시점에 기부금 수익이 아닌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지정된 목적(장학금)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학교법인과 부속병원의 전입금 및 전출금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은 부속병원으로부터 전입 받은 금액과 부속병원에 전출한 금액을 상계하여 부속병원 전·출입금이 과소계상됨

○ 학교법인은 임의특정목적기금을 건축기금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기금 인출 및 적립 회계처리 수행 시 적립금의 용도변경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운영계산서 상 운영차액대체액과 제적립금대체액이 과소계상되었음

○ 학교의 비등록금회계에서 기숙사 입주생의 식비를 수령하여 정산 후 위탁업체에 납부하는 거래는 입주생이 납부하는 시점에 기타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위탁업체에 지급 시 기타예수금을 상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비 수령 및 지급 시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학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계약학과 훈련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조금은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보전에 해당되므로 등록금수입 및 교외장학금을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함

(비 용)

1. 기간 귀속 오류

○ ○○○대학교는 결산일 현재 확정된 비용인 인터넷사용료를 실제 지급한 회계연도에 비용 처리함에 따라 미지급금 및 통신비를 과소계상함

○ 학교(등록금회계)는 차년도 장학금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여 장학금 및 미지급금을 각각 과대계상함

○ 학교(등록금회계)는 음악대학 실습을 위하여 차년도에 제공받을 대관료를 선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연도 실험실습비 계정으로 비용처리함에 따라 선급금을 과소계상하고 실험실습비를 과대계상함

2. 계정 분류 오류

○ 학교는 교비회계 소속 사무수행직원에 대한 산학협력단 업무 수행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산학협력단 전입금으로 처리하여 인건비 및 산학협력단 전입금이 각각 과대계상됨

○ 학교(비등록금회계)는 기숙사 입주생으로부터 수납받은 기숙사비 등을 대여·사용료로 계상하지 않고 기타교육부대수입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학교는 전기 및 전기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당기 중 지급하면서 잡손실이 아닌 교원퇴직금으로 처리하였음

○ 학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산인 노트북, 컴퓨터 등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집기비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함

○ 학교는 학교기업 지원사업 교비대응투자금을 비등록금회계의 학생지원비 또는 기타운영비 등 적절한 비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기업전출금으로 처리함

3.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 학교는 비품을 정액법(5년)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됨

○ 건물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재평가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취득원가 기준 상각누계액을 재평가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상각대상금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함. 또한, 건물 재평가 이후의 내용연수는 특례규칙상 정해진 40년을 기준으로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법인 추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취득 후 경과기간을 제외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함.

○ 학교의 건물 자본적 지출에 대해 원본 건물의 잔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내용연수(40년)에 따라 감가상각함

(주석 공시 오류)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A병원은 특수관계자(총장 및 총장의 배우자)와의 자금거래에 대해서 주석 공시 누락함

○ 학교법인 및 학교는 과태료 납부 내역(학교법인 1건, 학교 2건)을 주석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함

○ 학교는 교육용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사항을 주석공시하지 않음

○ 법인수익사업회계 및 병원은 미수금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정, 대손상각액 등을 주석기재 하지 아니함

○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주요 사항(원고, 소송가액, 계류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함. 또한 우발사항에 해당하는 서울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함

○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및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에 대한 주석 공시를 누락함

(법령 위반 사항)

○ 법인 수익사업회계는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의 기채허가를 득하지 아니함

○ 학교는 교육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무상 임대함

○ 학교법인은 타 업체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교비회계로 직접 세입처리 하여야 할 임대수입을 학교법인에서 세입처리 후 일부만 학교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학교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

○ 학교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없이 교비회계에서 전액 부담함

○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중 일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학교 등록금회계 이월금 내역 중 명시이월로 분류된 건물 양성화 관련 내역은 세부적인 세출예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월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기타이월에 해당되는 항목을 명시이월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월금을 적정하게 분류할 경우 기타이월 비율이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상 수입총액의 20%로 기준(1%)을 초과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속병원은 약재를 구매하면서 적법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함

참고 2 실태점검 지적사항

❑ 실태점검 주요 지적사항

(예 산)

1. 예산 편성

○ 학교는 기숙사 및 평생교육원 예산 편성 시 비등록금회계로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를 등록금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처리하고 있음

○ 학교법인과 학교는 2021년 예산부속명세서 중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와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를 작성 및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학교법인과 학교는 2020년 및 2021년 예산 편성 시 장기차입금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반영하지 않음

○ 학교법인 및 학교는 예산 편성 부서와 자금 집행 부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회계별 담당자가 예산 편성과 자금 집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2. 예산 집행

○ 학교는 '21학년도 이사회 심의·의결('22.2.9)을 통해 추경예산을 확정한 이후 등록금회계 난방비, 비등록금회계 장비관리비 등을 예산액 대비 초과 집행함

○ 학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비교통비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용을 통해 여비교통비를 추가 집행함

○ 학교는 관내 항간 및 목간 과부족이 있는 경우 예산 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전용 후 이사회에 별도 안건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

(결 산)

1. 결산 일반

○ 학교법인은 홈페이지에 결산서 공개 시 필수 부속서류 중 하나인 외부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첨부된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서에 한하며 감사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지 않음

○ 학교법인은 '21년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 시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제세예수금, 기타예수금의 잔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 및 공개하지 않았음

2. 자산 Ⅰ [유동자산]

○ 학교법인의 명절 선물 구입대 등의 지출과 이사회회의비가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전산망을 통한 계좌 이체의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지출되었음. (상품권 구입비, 이사회 회의비 현금 지출)

○ 학교는 예금계좌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음

○ 학교는 정기예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나, 예치 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제안을 받아 그 중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주거래은행 위주로 자금을 예치하고 있음

○ 학교는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오선발로 인해 취소가 됨에 따라 회계상 인식한 미수금(2014, 2015년 발생분)에 대해 장기간 미회수 하였으며, 관련 대손처리도 인식하지 않음

3. 자산Ⅱ[비유동자산]

○ 학교는 외국인 기숙사 용도로 임차한 다가구 건물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학교법인은 사용내역이 없는 골프회원권(1구좌)을 법인수익사업회계 기타투자자산 과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골프회원권은 기명식으로 일부 임원 및 해당 임원 동행 시에만 이용 가능함

○ 학교는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을 그 외 건축적립금과 구분 없이 다수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학교는 비등록금회계에 임의특정목적적립금을 계상하고 있으나, 특정목적적립금의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 용도를 확인할 수 없음

○ 학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의장학기금을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용도 변경('21.6.22) 하였으나, 사전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음

○ 학교는 임의건축기금 등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음

○ 학교는 임의장학기금 및 임의건축기금 및 임의특정목적기금을 인출하고 집행 후 미사용액을 재적립하지 아니하고 운영비 계좌로 입금 관리하고 있음

○ 학교는 차량운반구 1대를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폐기하였으며, 사후적으로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결산 심의·확정으로 갈음함

○ 학교법인은 자산 관리를 위하여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매 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분실·폐기 등의 자산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나, 학교법인은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학교법인은 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액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중 일부는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음

○ 학교는 등록금회계 자금수입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건물공사비로 집행함에 있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금액 보다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4. 부채 및 자본금

○ 학교는 재무상태표 상 등록금선수금을 인식하고 있으나, 등록금선수금을 학기 개시 전 집행하였음

5. 수익

○ 학교는 푸른등대기부장학금(삼성SOS) 수입을 기부금수입이 아닌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회계처리함

○ 법인은 '21학년 지정기부금을 수취하고 사용하였으나 기부금의 수취처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부약정서 또는 기부금영수증 일부가 존재하지 않음

○ 학교는 교육부의 지원금을 위탁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 받은 온라인 원격 도우미 지원사업비,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사업비를 기타국고지원 수입으로 처리함

○ 학교법인은 학교와 은행 간 주거래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은행의 지정기부금(법인사무국 운영 및 산하학교지원)을 법인일반회계 세입처리하고 운영비로 사용함

6. 비용

○ 학교는 희망퇴직규정(명예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희망퇴직금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희망퇴직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 1명에게 총장의 내부 결재만으로 희망퇴직 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학교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규정에 존재 하지 않는 운영수당, 감사인수당, 대학평의원회 회의수당을 연구비로 지급함

○ 학교법인과 학교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직원 1인에 대한 급여를 전액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음

○ 학교는 업무 관련회의 시 회의비, 업무추진비를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전표 외의 증빙 내용이 작성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21.3월부터 '22.2월까지 기관장업무추진비의 집행실적이 있으나 이를 매 익월 10일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 학교는 기숙사의 통신비 및 기타용역비를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였음

○ 학교법인은 교통비 명목으로 회당 정액을 지급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음

○ 학교는 총장장학금에 대한 선발기준이 사회지도층 및 학교발전기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된 8명은 확인결과 원우회(동창회) 회원이거나 그 외 불분명한 사유로 장학생이 선발되었음

○ 학교는 공교육정상화연구센터 계약직(입학사정관) 7인에 대한 급여를 입시수당에서 지급하였음

○ 학교는 입시수수료 미집행 잔액이 존재함에도 반납처리하고 있지 않음

○ 소송 관련 비용을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나, '21학년도 상반기 고문변호사 등 총 7건의 변호사선임, 소송관련 비용을 등록금회계 예산에서 집행함

(시설 및 재산)

1. 교육용 재산

○ 학교법인은 재산을 취득한 때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용기본재산 총 43건, 면적 55,691㎡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 학교는 사회교육관 XX호를 '주식회사 르○○'에서 지배인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함. '주식회사 르○○'는 사회교육관 XX호를 학교와의 임대차계약 없이 사용 중이며, 학교는 교육용 건물은 학생 교육 및 학생 복지시설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업이 교육용 기본재산인 상기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므로 기본재산 취득 시 반드시 이사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학교법인에서 '21년도에 취득한 교육용건물 1동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음

2. 수익용 재산

○ 학교는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22.2.28 기준 총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예금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비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음

○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관할청 허가를 득하지 않은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2건 존재함 (학교법인이 소유하기 전에 설정된 것으로 관할청 사후 보고하여야 함)

○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85.4.23 취득) 내 11층 3건(XX호, XX호, XX호)에 대해 고도제한에 따른 등기 불가능을 사유로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

○ 학교법인에서 관리하는 기본재산 관리대장의 내역과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수익용 기본재산(토지/건물) 보유현황 보고 내역이 상이하며 기말 잔액의 경우는 결산서 상의 금액과도 차이가 있음

○ 학교법인은 수익용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획득하고 있으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의 종류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OO도 OO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관할청 허가 전 수익용 예금 중 일부를 처분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함

참고 3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1. 수입 항목

과목			적용회계			해설
				학교회계		
관	항	목	법인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	○	○	
	5110 등록금수입		×	○	×	
		5111 학부입학금	×	○	×	대학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5112 대학원입학금	×	○	×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5113 학부수업료	×	○	×	대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5114 대학원수업료	×	○	×	대학원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5120 수강료수입		×	×	○	
		5121 단기수강료	×	×	○	특별강좌·평생교육강좌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5200 전입 및 기부수입			○	○	○	
	5210 전입금수입		○	○	○	
		5211 경상비전입금	×	×	○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5212 법정부담전입금	×	×	○	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전입금
		5213 자산전입금	×	×	○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받는 현금
		5214 부속병원전입금	○	×	○	학교 또는 법인이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으로부터 전입받는 금액
		5215 특별회계전입금	○	○	○	특별회계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216 교내전입금	×	○	○	교내 다른 회계 조직으로부터 받는 전입금(4516 교내전출금과 대응)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5217 수익사업전입금	○	×	×	수익사업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5218 등록금회계전입금	×	×	○	비등록금회계가 등록금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
	5220 기부금수입		○	×	○	
		5221 일반기부금	○	×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5222 지정기부금	○	×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5223 연구기부금 수입은 제외한다)
		5223 연구기부금	○	×	○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는 기부금
	5230 국고보조금수입		○	×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5231 교육부	○	×	○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 세목에서 국가장학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으로 구분
		5232 기타국고지원	○	×	○	교육부 외 기타 정부 부처로부터 받는 보조금
		5233 지방자치단체	○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524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	○	○	
		5241 산학협력단 전입금	×	×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242 학교기업 전입금	×	○	○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300 교육부대수입			×	×	○	
	5310 입사수수료수입		×	×	○	4330 입시관리비와 대응
		5311 입학 원서대	×	×	○	입학원서 판매대금
		5312 수험료	×	×	○	입시지원자로부터 받는 수험료수입
	5320 증명·사용료수입		×	×	○	
		5321 증명료	×	×	○	졸업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하고 받는 각종 수수료수입
		5322 대여료 및 사용료	×	×	○	강당·교실·기계·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임대보증금수입은 2221 임대보증금수입에 계상하고,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수입은 5431 임대료수입에 계상한다)
	5330 기타교육부대수입		×	×	○	
		5331 논문심사수입	×	×	○	학생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료 수입(4324 논문심사료와 대응)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5332 실습수입	×	×	○	실험·실습 등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의 매각수입 또는 실험용역수입
		5339 기타교육부대수입	×	×	○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
5400 교육외수입			○	○	○	
	5410 예금이자수입		○	○	○	
		5411 예금이자	○	○	○	각종 예금이자수입(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
	5420 기타교육외수입		○	○	○	
		5421 잡수입	○	○	○	연구간접비·위약금·보험금수입 등의 잡수입
	5430 수익재산수입		○	×	×	법인회계의 수익재산수입(수익사업회계로 별도 독립되어 정리되는 수입 외의 수입)
		5431 임대료수입	○	×	×	수익용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 (보증금은 2221 임대보증금수입에 계상한다)
		5432 배당금수입	○	×	×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 등
		5433 임·농·수산물수입	○	×	×	수익용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농장 등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농산물·수산물의 판매대금
		5439 기타수익재산수입	○	×	×	그 밖의 수익용 기본재산수입
1200 투자와기타자산수입			○	○	○	
	1220 투자자산수입		○	○	○	
		1221 투자유가증권 매각대	○	×	○	채권·주식 등의 유가증권 실제 매각금액(장부가액이 아님)
		1222 출자금 회수	○	×	×	수익사업 계정의 출자금 또는 투자금을 회수한 금액
		1224 학교기업투자자산 회수	×	○	○	학교가 학교기업으로부터 회수한 투자금액
		1229 기타투자자산수입	○	×	○	그 밖의 투자자산의 회수금액
	1240 기타자산수입		○	○	○	
		1241 전신·전화보증금 회수	○	×	○	예치한 전신·전화보증금을 회수한 금액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1242 임차보증금 회수	○	○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임차할 때 예치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금액
		1243 장기대여금 회수	○	×	○	대여했던 장기대여금을 당기에 회수한 금액
		1244 수익용예금 인출	○	×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탁예금의 인출
		1249 기타자산 수입	○	○	○	그 밖의 자산의 매각 또는 회수금액
	1250 원금보존기금인출수입		○	×	○	※예산편성(유동자금화)을 필요로 함
		1251				※1250항목과 3150항목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1251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52 원금보존연구기금 인출	○	×	○	원금보존연구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53 원금보존건축기금 인출	○	×	○	원금보존건축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54 원금보존장학기금 인출	○	×	○	원금보존장학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55 원금보존특정목적기금인출	○	×	○	원금보존특정목적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60 임의기금인출수입		○	×	○	※예산편성(유동자금화)을 필요로 함
		1261				※1260항목과 3160항목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1261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62 임의연구기금인출	○	×	○	임의연구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63 임의건축기금인출	○	×	○	임의건축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64 임의장학기금인출	○	×	○	임의장학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65 임의퇴직기금인출	○	×	○	임의퇴직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66 임의특정목적기금 인출	○	×	○	임의특정목적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300 고정자산매각수입			○	○	○	
	1310 유형고정자산 매각수입		○	○	○	
		1311 토지 매각대	○	○	○	토지(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1312 건물 매각대	○	○	○	건물(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3 구축물 매각대	○	○	○	구축물(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4 기계·기구 매각대	○	○	○	기계·기구(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5 집기비품 매각대	○	○	○	집기비품(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6 차량운반구 매각대	○	○	○	차량(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7 도서 매각대	○	○	○	도서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8 유물 매각대	×	○	○	유물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20 무형고정자산 매각수입		○	○	○	
		1321 무형 고정자산 매각대	○	○	○	특허권·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자산의 매각대금 총액(상각액은 제외한다)
2100 유동부채입금			○	×	○	
	2110 단기차입금		○	×	○	
		2111 단기차입금 차입	○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
2200 고정부채입금			○	×	○	
	2210 장기차입금		○	×	○	
		2211 장기차입금 차입	○	×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차입금의 차입(외화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2212 차관도입	○	×	○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에 따른 원화 입금액
		2213 학교채 발행	○	×	○	학교채 발행에 따른 차입액
	2220 기타 고정부채		○	○	○	
		2221 임대보증금수입	○	×	○	토지·건물·기계 등을 임대하고 받는 각종 보증금 수입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3100 기본금		2229 기타고정부채수입	○	○	○	그 밖의 장기부채 발생으로 인한 자금수입
	3110 출연기본금		○	×	○	
			○	×	○	
		3111 설립자기본금	○	×	×	설립자 및 이사장,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
		3112 법인	×	×	○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기본금 (1210 설치학교와 대응)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전기이월자금		○	○	○	기초 유동자산-기초 유동부채 ※ 전기말 자금계산서의 차기이월 자금과 일치
	1100 기초유동자산		○	○	○	
		1110 유동자금	○	○	○	기초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금 총액
		1120 기타 유동자산	○	○	○	기초 재무상태표상의 기타유동자산 총액
	2100 기초유동부채		○	○	○	
		2120 예수금	○	○	○	기초 재무상태표상의 예수금 총액
		2130 선수금	○	○	○	기초 재무상태표상의 선수금 총액
		2140 기타유동부채	○	○	○	기초 재무상태표상의 기타유동부채 총액
자금수입 총계			○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자금수입총계는 자금지출총계와 일치해야 함.

2. 지출 항목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100 보수			○	○	○	
	4110 교원보수		○	○	○	
		4111 교원급여	×	○	○	교원의 정액급여(인건비성 연구보조비를 포함하되, 정액수당은 제외한다)
		4112 교원상여금	×	○	○	교원의 상여금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113 교원각종수당	×	○	○	초과강의료 · 정액수당 · 정근수당 · 식대보조비 · 학생지도비 등 교원의 각종 수당
		4114 교원법정부담금	×	○	○	교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15 시간강의료	×	○	○	정규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강의료
		4116 특별강의료	○	○	○	비정규 교육과정의 강의(강연)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4117 교원퇴직금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4118 조교인건비	×	○	○	유급조교(장학조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 · 상여금 · 각종 수당 ·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4120 직원보수		○	○	○	
		4121 직원급여	○	○	○	직원의 정액급여
		4122 직원상여금	○	○	○	직원의 상여금
		4123 직원각종수당	○	○	○	정액수당 · 정근수당 · 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당
		4124 직원법정부담금	○	○	○	직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25 임시직인건비	○	○	○	임시직 직원의 급여 · 상여 및 각종 수당
		4126 임금	○	○	○	일용 인부의 임금
		4127 직원 퇴직금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4200 관리 · 운영비			○	○	○	
	4210 시설 관리비		○	○	○	
		4211 건축물관리비	○	○	○	건축물의 보수 및 유지 · 관리비
		4212 장비관리비	○	○	○	공구, 비품, 기계 · 기구류의 수선 및 수리비

과목			적용회계			해설
				학교회계		
관	항	목	법인 회계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4213 조경관리비	○	○	○	조경 · 운동장 및 구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 · 보수비
		4214 박물관관리비	×	○	○	박물관 및 유물관리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4215 시설 용역비	○	○	○	청소 · 경비 등 시설용역 비용
		4216 보험료	○	○	○	건축물 · 시설물 · 동산 등의 재해보험료
		4217 리스 · 임차료	○	○	○	토지 · 건물 ·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4219 기타시설관리비	○	○	○	그 밖의 시설의 유지 · 관리에 드는 비용
	4220 일반 관리비		○	○	○	
		4221 여비 교통비	○	○	○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4222 차량 유지비	○	○	○	차량 유지에 드는 유류비 · 수리비 등 (다만, 보험료는 4216 보험료에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4228 각종 세금 · 공과금에 계상한다)
		4223 소모품비	○	○	○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복사용지 · 프린트용지 · 간행물구독료 등 각종 사무용품비)
		4224 인쇄 · 출판비	○	○	○	각종 서식 및 유인물의 인쇄비와 제본비
		4225 난방비	○	○	○	난방 등에 드는 연료구입비 등
		4226 전기 · 수도료	○	○	○	전기 · 수도요금
		4227 통신비	○	○	○	전신 · 전화 · 우편요금 등의 통신비
		4228 각종 세금 · 공과금	○	○	○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 · 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
		4229 지급 수수료	○	○	○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및 각종 증명 등의 발급 신청에 드는 수수료
	4230 운영비		○	○	○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231 복리 후생비	○	○	○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급여 시 지급하는 식대수당은 제외한다)와 의복·개인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4232 교육·훈련비	○	○	○	교직원의 교육·훈련에 지출하는 비용
		4233 일반 용역비	○	○	○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
		4234 기관장 업무 추진비	○	○	○	기관장(이사장 및 총장)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5 상임이사 업무 추진비	○	×	×	상임이사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6 기타 업무 추진비	○	○	○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교직원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7 홍보비	○	○	○	신문 공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 경비
		4238 회의비	○	○	○	각종 회의에 지출하는 비용
		4239 행사비	○	○	○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식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
		4240 선교비	○	○	○	종교계 법인 및 학교의 선교활동비
		4241 기타 운영비	○	○	○	그 밖의 운영비
4300 연구·학생경비			○	○	○	
	4310 연구비		×	○	○	
		4311 연구비	×	○	○	교원 및 직원 연구비
		4312 연구 관리비	×	○	○	연구용 도서 구입, 연구결과 보고서 출판 등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4320 학생경비		○	○	○	
		4321 교외장학금	○	×	○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4322 교내장학금	○	○	○	(등록금회계)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적립이자 등의 재원으로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지급하는 장학금
		4323 실험 실습비	×	○	○	실험·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1314 기계·기구 매입비에 계상한다)
		4324 논문 심사료	×	○	○	논문심사에 드는 비용(5331 논문심사수입과 대응)
		4325 학생 지원비	×	○	○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 보조 및 학생행사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
		4329 기타 학생경비	×	○	○	그 밖의 학생경비
	4330 입시 관리비		×	×	○	5310 입시수수료수입과 대응
		4331 입시수당	×	×	○	입학시험관리 담당 교직원의 수당
		4332 입시경비	×	×	○	입학시험에 드는 소모품비·수수료·인쇄비·광고료·임차료·식사비 등의 비용
4400 교육외비용			○	○	○	
	4410 지급이자		○	×	○	
		4411 지급이자	○	×	○	차입금·차관 등에 대한 이자 지급액
	4420 기타교육외비용		○	○	○	
		4421 잡손실	○	○	○	예측하지 못한 교육 외 특별비용
4500 전출금			○	○	○	
	4510 전출금		○	○	○	
		4511 경상비전출금	○	×	×	법인이 학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연구비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4512 법정부담전출금	○	×	×	법인이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4513 자산 전출금	○	×	×	법인이 학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출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출하는 현금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514 부속병원전출금	○	×	×	법인이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각종 전출금
		4515 특별회계전출금	○	○	○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4516 교내 전출금	×	○	○	교내의 다른 회계 조직에 전출하는 금액 (5216 교내전입금과 대응)
		4519 비등록금회계 전출금	×	○	×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
	454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출금		○	○	○	
		4541 산학협력단 전출금	○	×	○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4542 학교기업 전출금	○	○	○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4600 예비비			○	○	○	
	4610 예비비		○	○	○	
		4611 예비비	○	○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예비비의 예산을 빼서 해당 과목에 늘린다)
12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	○	○	
	1210 설치학교		○	×	×	
		1211 대학	○	×	×	법인회계에서 대학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2 전문대학	○	×	×	법인회계에서 전문대학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3 원격대학	○	×	×	법인회계에서 원격대학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4 유·초·중·고교	○	×	×	법인회계에서 유·초·중·고교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5 부속병원	○	×	×	법인회계에서 부속병원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1220 투자자산지출		○	○	○	
		1221 투자 유가증권 매입대	○	×	○	채권·주식 등 투자유가증권의 매입대금
		1222 출자금지출	○	×	×	수익사업 및 수익을 목적으로 출자하는 금액
		1223 부속병원투자지출	○	×	×	부속병원에 투자하는 금액(1215 부속병원 계상금액 제외)
		1224 학교기업투자지출	×	○	○	학교가 학교기업에 기본금(출자금)으로 투자하는 금액
		1229 기타투자자산지출	○	×	○	그 밖의 투자자산의 투자액
	1240 기타자산지출		○	○	○	
		1241 전신·전화보증금지출	○	×	○	전신 및 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1242 임차보증금지출	○	○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임차보증금 지급액
		1243 장기대여금지출	○	×	○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대여금의 대여
		1244 수익용예금 예치	○	×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탁예금의 예치
		1249 기타자산지출	○	○	○	그 밖의 자산의 취득 지출액
	1250 원금보존기금 적립		○	×	○	3150과 대응
		1251				※3150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52 원금보존연구기금 적립	○	×	○	원금보존연구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53 원금보존건축기금 적립	○	×	○	원금보존건축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54 원금보존장학기금 적립	○	×	○	원금보존장학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55 원금보존특정목적 기금적립	○	×	○	원금보존특정목적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1260 임의기금적립		○	×	○	3160과 대응
		1261				※3160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62 임의연구기금적립	○	×	○	임의연구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3 임의건축기금적립	○	×	○	임의건축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4 임의장학기금적립	○	×	○	임의장학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5 임의퇴직기금적립	○	×	○	임의퇴직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6 임의특정목적기금적립	○	×	○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300 고정자산 매입지출						
	1310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	○	○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예산(자금)이 수반될 때에는 자금 항목이나, 기증 등과 같이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고정자산 증가는 자금 항목이 아닌 재무상태표 증가 항목임
		1311 토지매입비	○	×	○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금과 그 부대비용 ※등록금회계에서의 토지매입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토지매입비, 건물 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중인자산 지출은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것(권고)
		1312 건물매입비	○	○	○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3 구축물매입비	○	○	○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4 기계 · 기구매입비	○	○	○	기계 및 기구 등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5 집기비품매입비	○	○	○	비품 및 집기 등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6 차량운반구매입비	○	○	○	차량구입비와 그 부대비용(취득세 · 등록세 등)
		1317 도서 구입비	○	○	○	도서관 비치용 도서구입비와 부대비용(각 부서의 간행물 구독료는 4223 소모품비에 계상한다)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1318 박물관유물구입비	×	×	○	박물관 유물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9 건설중인자산	○	○	○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건설 관련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취득 또는 완공 후 해당 과목으로 대체한다)
	1320 무형고정자산취득비		○	×	○	
		1321 무형고정자산취득비	○	×	○	특허권 · 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자산의 취득대금
2100 유동부채상환			○	×	○	
	2110 단기차입금상환		○	×	○	
		2111 단기차입금상환	○	×	○	단기차입금의 실제상환액(장부가액이 아님)
		2112 유동성장기부채상환	○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장기차입금, 차관, 학교채의 실제 상환액(장부가액이 아님)
2200 고정부채상환			○	○	○	
	2210 장기차입금상환		○	×	○	
		2211 장기차입금상환	○	×	○	장기차입금의 실제상환액(외화차입금의 경우 상환차손익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장부가액이 아님)
		2212 차관상환	○	×	○	차관 실제상환액(상환차손익을 포함한 금액, 장부가액이 아님)
		2213 학교채상환	○	×	○	학교채의 상환액
	2220 기타고정부채상환		○	○	○	
		2221 임대보증금환급	○	×	○	임대기간의 종료로 부채로 받아 둔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는 금액
		2222 장기미지급금상환	○	○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미지급금의 상환금액
		2229 기타고정부채의 상환	○	○	○	그 밖의 고정부채의 상환액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차기이월자금		○	○	○	당기말 유동자산-당기말 유동부채 (다음 회계연도 전기이월자금과 일치해야 함)
	1100 기말유동자산		○	○	○	
		1110 유동자금	○	○	○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금 총액
		1120 기타 유동자산	○	○	○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기타유동자산 총액
	2100 기말유동부채		○	○	○	
		2120 예수금	○	○	○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예수금
		2130 선수금	○	○	○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선수금
		2140 기타 유동부채	○	○	○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그 밖의 유동부채 총액
자금지출 총계			○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자금지출 총계는 자금수입 총계와 일치해야 함.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1. 자 산

과목			적용회계			해설
				학교회계		
관	항	목	법인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1100 유동자산			○	○	○	
	1110 유동자금		○	○	○	
		1111 현 금	○	○	○	자금 출납부서에서 관리·보관하는 현금[일반 업무부서의 소액현금 선지급액을 포함한다]
		1112 예 금	○	○	○	금융회사에 예치된 각종 예금
	1120 기타유동자산		○	○	○	
		1121 단기 대여금	○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다른 회계 조직 등에 대한 일시적 대여금
		1122 선급금	○	○	○	물품 및 용역 구입비용 등의 선지급액
		1123 미수금	○	○	○	일반적인 거래의 미수채권
		1124 가지급금	○	○	○	액수나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각종 비용의 선지급액 (소액현금은 1111 현금에 계상한다)
		1125 선급 법인세	○	○	○	예금이자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세액 중 차후 환급이 되는 법인세
		1126 받을어음	○	○	○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1129 기타 유동자산	○	○	○	회수 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그 밖의 유동자산
1200 투자와기타자산			○	○	○	
	1210 설치학교		○	×	×	
		1211 대학	○	×	×	대학회계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 (3112 법인과 대응) ※ 대학 투자액, 대학 투자액 차감으로 세목 구분
		1212 전문대학	○	×	×	전문대학회계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 (3112 법인과 대응) ※ 전문대학 투자액, 전문대학 투자액 차감으로 세목 구분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1213 원격대학	○	×	×	원격대학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3112 법인과 대응) ※ 원격대학 투자액, 전원격대학 투자액 차감으로 세목 구분
		1214 유·초·중·고교	○	×	×	유·초·중·고교회계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3112 법인과 대응)
		1215 부속병원	○	×	×	부속병원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회계의 투자액(3112 법인과 대응)
	1220 투자자산		○	○	○	
		1221 투자 유가증권	○	×	○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사채 및 국공채 등
		1222 출자금	○	×	×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회사 외의 투자액
		1223 부속병원투자	○	×	×	부속병원에 투자하는 금액(1215 부속병원 계상금액 제외)
		1224 학교기업 투자	×	○	○	학교가 학교기업에 투자하는 금액
		1225 등록금회계	×	×	○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을 등록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1229 기타 투자자산	○	×	○	그 밖의 각종 투자자산
	1240 기타자산		○	○	○	
		1241 전신·전화보증금	○	×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1242 임차 보증금	○	○	○	부동산 등의 임차보증금
		1243 장기 대여금	○	×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각종 대여금
		1244 수익용 예금	○	×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탁예금
		1249 기타자산	○	○	○	그 밖의 자산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1250 원금보존기금		○	×	○	
		1251				※3150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52 원금보존연구기금	○	×	○	연구 장려 등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금 등
		1253 원금보존건축기금	○	×	○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금 등
		1254 원금보존장학기금	○	×	○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금 등
		1255 원금보존특정목적기금	○	×	○	학교발전 등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금 등
	1260 임의기금		○	×	○	
		1261				※3160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62 임의연구기금	○	×	○	연구 장려 등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3 임의건축기금	○	×	○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4 임의장학기금	○	×	○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5 임의퇴직기금	○	×	○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6 임의특정목적기금	○	×	○	학교발전 등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300 고정자산			○	○	○	
	1310 유형 고정자산		○	○	○	
		1311 토지	○	○	○	대지 · 임야 · 전 · 답 · 잡종지 등
		1312 건물	○	○	○	건물 및 냉난방 · 보일러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1313 구축물	○	○	○	저수지 · 정원설비 · 굴뚝 · 각종 토목설비 또는 인공구조물 등
		1314 기계기구	○	○	○	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1315 집기비품	○	○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집기비품 및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전산프로그램 등
		1316 차량 운반구	○	○	○	자동차 및 그 밖의 운반구
		1317 도서	○	○	○	도서비치용 도서 (일반부서의 간행물은 제외한다)
		1318 박물관유물	×	○	○	박물관의 각종 유물
		1319 건설중인자산	○	○	○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건설 관련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취득 또는 완공 후 해당 과목으로 대체한다)
	1320 무형 고정자산		○	○	○	
		1321 무형 고정자산	○	○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광업권 · 어업권 등 각종 무형고정자산
자산 총계			○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자산 총계는 부채 및 기본금 총계와 일치해야 함.

2. 부채 및 기본금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2100 유동부채			○	×	○	
	2110 단기 차입금		○	×	○	
		2111 단기 차입금	○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차입금 등
		2112 유동성장기부채	○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장기차입금, 차관, 학교채
		2113 유동성학교채발행차금	○	×	○	상환기간 1년 이내 도래하는 학교채 발행 시 액면가와 실제 발행액의 차금 중 미상각액(할증발행차금은 +, 할인발행차금-표시)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2120 예수금		○	○	○	
		2121 일반 예수금	○	○	○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연금·의료보험 등 일시적 예수액
		2122 각종세금 예수금	○	○	○	갑근세 원천징수액 등 일시적인 각종 세금 예수금
		2123 특별회계예수금	○	○	○	특별회계로부터 예수한 금액
		2129 기타 예수금	○	○	○	그 밖의 일시 예수금
	2130 선수금		○	○	○	
		2131 등록금선수금	×	○	×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납된 등록금 등
		2132 학교채선수금	○	×	○	학교채 청약금(미발행 금액)
		2139 기타선수금	○	○	○	그 밖의 선수금
	2140 기타 유동부채		○	○	○	
		2141 미지급금	○	○	○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 및 비용
		2142 가수금	○	○	○	송금자나 입금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지로계좌 등의 입금액 (결산 시 해당 과목으로 대체한다)
		2143 지급어음	○	○	○	일반적 매입거래 대가로 발행한 어음금액
		2149 기타 유동부채	○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그 밖의 부채
2200 고정부채			○	×	○	
	2210 장기 차입금		○	×	○	
		2211 장기 차입금	○	×	○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외화 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2212 차관	○	×	○	각종 차관의 미상환 잔액

과목			적용회계			해설
			법인회계	학교회계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2213 학교채	○	×	○	학교채 미상환액(액면가)
		2214 학교채발행차금	○	×	○	학교채 발행 시 액면가와 실제발행액의 자금 중 미상각액(할증발행차금은 +, 할인발행차금 -로 표시)
	2220 기타 고정부채		○	○	○	
		2221 임대 보증금	○	×	○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
		2222 장기 미지급금	○	○	○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미지급금
		2229 기타 고정부채	○	○	○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그 밖의 부채
2300 감가상각누계액			○	○	○	
	2310 감가상각누계액		○	○	○	
		2312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	○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건물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3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	○	구축물의 감가상각 누계액(구축물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4 기계기구감가상각누계액	○	○	○	기계기구의 감가상각 누계액(기계기구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5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	○	집기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집기비품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6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	○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차량운반구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7 도서감가상각누계액	○	○	○	도서의 감가상각 누계액(도서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400 사용수익권			○	×	○	
	2410 사용수익권		○	×	○	
		2411 사용수익권	○	×	○	BTO방식으로 준공된 건물의 운영권에 대한 회계처리(건물 차감계정이며 권리제공기간에 거쳐 상각함)

과목			적용회계			해설
				학교회계		
관	항	목	법인 회계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25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5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5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법인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
3100 기본금			○	×	○	
	3110 출연기본금		○	×	○	
		3111 설립자기본금	○	×	×	설립자 및 이사장,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
		3112 법인	×	×	○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기본금(1210 설치학교와 대응) ※ 법인 출연액, 법인 출연액 차감으로 세목 구분
		3113 기타 기본금	○	×	×	설립자기본금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상당하는 기본금
	3150 원금보존적립금		○	×	○	1250 원금보존기금과 대응
		3151				※ 3161 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3152 원금보존연구적립금	○	×	○	원금보존연구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53 원금보존건축적립금	○	×	○	원금보존건축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54 원금보존장학적립금	○	×	○	원금보존장학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55 원금보존특정목적적립금	○	×	○	원금보존특정목적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0 임의적립금		○	○	○	1250 임의기금과 대응
		3161 재평가적립금	○	○	○	※ 3174 자산재평가차액으로 대체함
		3162 임의연구적립금	○	×	○	임의연구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3 임의건축적립금	○	×	○	임의건축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3164 임의장학적립금	○	×	○	임의장학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5 임의퇴직적립금	○	×	○	임의퇴직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6 임의특정목적적립금	○	×	○	임의특정목적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70 기본금조정		○	×	○	
		3171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	○	당기의 운용결과로 볼 수 없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의 미실현보유손익(이익은 +, 손실은 -로 표시)
		3172 기금평가손익	○	×	○	당기의 운용결과로 볼 수 없는 기금평가손익 등의 미실현보유손익(이익은 +, 손실은 -로 표시)
		3173 비등록금회계	×	○	×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을 등록금회계로 전입받은 금액
		3174 자산재평가차액	○	○	○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익(이익은 +, 손실은 -로 표시)
	3130 운영차액		○	○	○	
		3131 전기이월운영차액	○	○	○	전기 이월운영차액(전기 재무상태표상의 3130과 일치해야 한다)
		3132 당기운영차액	○	○	○	당기 운영차액(운영계산서상의 당기 운영차액과 일치해야 한다)
부채 및 기본금 총계			○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부채 및 기본금 총계는 자산 총계와 일치해야 함.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1. 운영수익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	○	○	
	5110 등록금수입		×	○	×	
		5111 학부입학금	×	○	×	대학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5112 대학원입학금	×	○	×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5113 학부수업료	×	○	×	대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5114 대학원수업료	×	○	×	대학원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5120 수강료수입		×	×	○	
		5121 단기수강료	×	×	○	특별강좌·평생교육강좌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5200 전입 및 기부수입			○	×	○	
	5210 전입금수입		○	×	○	
		5211 경상비전입금	×	×	○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의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5212 법정부담전입금	×	×	○	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전입금
		5213 자산전입금	×	×	○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받는 현금 및 물품
		5214 부속병원전입금	○	×	○	학교나 법인이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으로부터 전입받는 금액
		5215 특별회계전입금	○	○	○	특별회계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216 교내 전입금	×	○	○	교내 다른 회계 조직(특별회계 제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4516 교내 전출금과 대응)
		5217 수익사업전입금	○	×	×	수익사업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5218 등록금회계 전입금	×	×	○	비등록금회계가 등록금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
	5220 기부금수입		○	×	○	
		5221 일반기부금	○	×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5222 지정기부금	○	×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연구기부금은 5223 연구기부금에 계상한다)
		5223 연구기부금	○	×	○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는 기부금
		5224 현물기부금	○	×	○	토지·건축물·실험기자재·유물 등의 기증받은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5230 국고보조금		○	×	○	
		5231 교육부	○	×	○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 세목에서 국가장학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으로 구분
		5232 기타국고지원	○	×	○	교육부 외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받는 보조금
		5233 지방자치단체	○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524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	○	○	
		5241 산학협력단 전입금	×	×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및 물품
		5242 학교기업전입금	×	○	○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및 물품
5300 교육부대수입			×	×	○	
	5310 입시수수료수입		×	×	○	4330 입시관리비와 대응
		5311 입학원서대	×	×	○	입학원서 판매대금
		5312 수험료	×	×	○	입시지원자로부터 받는 수험료수입
	5320 증명·사용료수입		×	×	○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5321 증명료	×	×	○	졸업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하고 받는 각종 수수료수입
		5322 대여・사용료	×	×	○	강당, 교실, 기계・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임대보증금수입은 2221 임대보증금수입에 계상하고,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수입은 5431 임대료수입에 계상한다)
	5330 기타교육부대수입		×	×	○	
		5331 논문심사료수입	×	×	○	학생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료수입(4324 논문심사료와 대응)
		5332 실습수입	×	×	○	실험・실습 등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의 매각수입 또는 용역수입
		5339 기타교육부대수입	×	×	○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
5400 교육외수입			○	○	○	
	5410 예금이자수입		○	○	○	
		5411 예금이자	○	○	○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의 이자수입을 포함한다)
	5420 기타교육외수입		○	×	○	
		5421 잡수입	○	○	○	연구간접비・위약금・보험금수입 등 잡수입
		5422 외화환산이익	○	○	○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회수 및 상환에 따른 이익은 5423 외환차익에 계상한다)
		5423 외환차익	○	○	○	외화자산의 회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금액 및 외화부채의 상환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금액(자금계산서에는 회수 및 상환액의 총계를 원인 과목에 계상한다)
		5424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	×	○	투자유가증권의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5426 고정자산처분이익	○	○	○	고정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자금계산서에는 매각액 총계를 원인 과목에 계상한다)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5428 전기오류수정이익	○	○	○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 수정이익
	5430 수익재산 수입		○	×	×	법인회계의 수익재산 수입(수익사업회계로 별도 독립되어 정리되는 수입 외의 수입)
		5431 임대료 수입	○	×	×	수익용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수입(임대보증금은 2221 임대보증금수입에 계상한다)
		5432 배당금 수입	○	×	×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받는 배당금등
		5433 임·농·수산물 수입	○	×	×	수익용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농장 등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농산물·수산물의 판매대금
		5439 기타수익재산수입	○	×	×	그 밖의 수익용 기본재산수입
550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환입액						
	551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환입액					
		5511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환입액	○	○	○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이체)한 금액 및 미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환입액을 처리하기 위한 금액
운영수익 총계			○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운영수익 총계는 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함.

2. 운영비용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100 보수			○	○	○	
	4110 교원보수		○	○	○	
		4111 교원급여	×	○	○	교원의 정액급여(인건비성 연구보조비를 포함하되, 정액수당은 제외한다)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112 교원상여금	×	○	○	교원의 상여금
		4113 교원각종수당	×	○	○	초과강의료・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학생지도비 등 교원의 각종 수당
		4114 교원법정부담금	×	○	○	교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15 시간강의료	×	○	○	정규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강의료
		4116 특별강의료	○	○	○	비정규 교육과정의 강의(강연)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4117 교원퇴직금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4118 조교인건비	×	○	○	유급조교(장학조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각종 수당・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4120 직원보수		○	○	○	
		4121 직원급여	○	○	○	직원의 정액 급여
		4122 직원상여금	○	○	○	직원의 상여금
		4123 직원각종수당	○	○	○	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당
		4124 직원법정부담금	○	○	○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25 임시직인건비	○	○	○	임시직 직원의 급여・상여 및 각종 수당
		4126 임금	○	○	○	일용 인부의 임금
		4127 직원퇴직금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4200 관리・운영비			○	○	○	
	4210 시설관리비		○	○	○	
		4211 건축물관리비	○	○	○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
		4212 장비관리비	○	○	○	공구, 비품, 기계・기구류의 수선 및 수리비
		4213 조경관리비	○	○	○	조경・운동장 및 구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214 박물관관리비	×	○	○	박물관 및 유물 관리에 지출하는 각종비용
		4215 시설용역비	○	○	○	청소·경비 등 시설용역 비용
		4216 보험료	○	○	○	건축물·시설물·동산 등의 재해보험료
		4217 리스·임차료	○	○	○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4219 기타시설관리비	○	○	○	그 밖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4220 일반관리비		○	○	○	
		4221 여비교통비	○	○	○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4222 차량유지비	○	○	○	차량 유지에 드는 유류비·수리비 등 (다만, 보험료는 4216 보험료에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4228 각종 세금·공과금에 계상한다)
		4223 소모품비	○	○	○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복사용지·프린트용지·간행물구독료 등 각종 사무용품비)
		4224 인쇄·출판비	○	○	○	각종 서식 및 유인물의 인쇄비, 제본비 등
		4225 난방비	○	○	○	난방 등에 드는 연료구입비 등
		4226 전기·수도료	○	○	○	전기·수도요금
		4227 통신비	○	○	○	전신·전화·우편요금 등의 통신비
		4228 각종세금·공과금	○	○	○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
		4229 지급수수료	○	○	○	면허·허가·인가·등록 및 각종 증명 등의 발급 신청에 드는 수수료
	4230 운영비		○	○	○	
		4231 복리후생비	○	○	○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급여 시 지급하는 식대수당은 제외한다)와 의복·개인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4232 교육·훈련비	○	○	○	교직원의 교육·훈련에 지출하는 비용
		4233 일반용역비	○	○	○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
		4234 기관장 업무 추진비	○	○	○	기관장(이사장 및 총장)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235 상임이사 업무 추진비	○	×	×	상임이사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6 기타 업무 추진비	○	○	○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교직원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7 홍보비	○	○	○	신문 공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경비
		4238 회의비	○	○	○	각종 회의에 지출하는 비용
		4239 행사비	○	○	○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식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
		4240 선교비	○	○	○	종교계 법인 및 학교의 선교활동비
		4241 기타운영비	○	○	○	그 밖의 운영비
	4250 감가상각비		○	○	○	※ 운영계산서에만 해당됨
		4252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	○	유형고정자산의 해당 회계연도 감가상각액
		4253 무형고정자산 상각비	○	○	○	무형고정자산의 해당 회계연도 상각액
4300 연구학생경비			○	○	○	
	4310 연구비		×	○	○	
		4311 연구비	×	○	○	교원 및 직원 연구비
		4312 연구관리비	×	○	○	연구용 도서 구입, 연구결과 보고서 출판 등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4320 학생경비		○	○	○	
		4321 교외장학금	○	×	○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4322 교내장학금	○	○	○	(등록금회계)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및 적립이자, 수입이자 등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4323 실험실습비	×	○	○	실험·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1314 기계·기구 매입비에 계상한다)
		4324 논문심사료	×	○	○	논문심사에 드는 비용(5331 논문심사수입과 대응)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325 학생지원비	×	○	○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 보조 및 학생행사 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
		4329 기타학생경비	×	○	○	그 밖의 학생경비
	4330 입시관리비		×	×	○	5310 입시수수료수입과 대응
		4331 입시수당	×	×	○	입학시험관리 담당 교직원의 수당
		4332 입시경비	×	×	○	입학시험에 드는 소모품비・수수료・인쇄비・광고료・임차료・식사비 등의 비용
4400 교육외비용			○	○	○	
	4410 지급이자		○	×	○	
		4411 지급이자	○	×	○	차입금・차관 등에 대한 이자지급액(학교채발행차금 상각액 포함)
	4420 기타교육외비용		○	○	○	
		4421 잡손실	○	○	○	예측하지 못한 교육 외 특별비용
		4422 외화환산손실	○	○	○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회수 및 상환에 따른 손실은 4423에 계상한다)
		4423 외환차손	○	○	○	외화자산 회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 및 외화부채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자금계산서에는 회수 및 상환금액의 총계를 계상한다)
		4424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	×	○	투자유가증권 매각 대금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 금액
		4426 고정자산처분손실	○	○	○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 금액(자금계산서에는 매각액 총계를 계상한다)
		4428 고정자산폐기손실	○	○	○	고정자산의 폐기에 의해 발생한 손실
		4429 전기오류수정손실	○	○	○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 수정손실
4500 전출금			○	○	○	
	4510 전출금		○	○	○	
		4511 경상비전출금	○	×	×	법인이 학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연구비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70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4512 법정부담전출금	○	×	×	법인이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4513 자산전출금	○	×	×	법인이 학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출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출하는 현금
		4514 부속병원전출금	○	×	×	법인이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각종 전출금
		4515 특별회계전출금	○	○	○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4516 교내전출금	×	○	○	교내의 다른 회계 조직에 전출하는 금액(5216 교내전입금과 대응)
		4519 비등록금회계 전출금	×	○	×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
	4540 산학협력단 및학교기업 전출금		○	○	○	
		4541 산학협력단 전출금	○	×	○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4542 학교기업 전출금	○	○	○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471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4711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	○	○	법인 및 학교의 교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 전입액
운영비용 합계			○	○	○	
3100 기본금대체액			○	×	○	
	3120 각종적립금 대체액	–	○	×	○	각종 적립기금에 상당하는 운영차액의 대체액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운영차액 대체액			○	×	○	각종 적립금 인출에 따른 적립금 운영차액으로의 대체액
당기 운영차액			○	○	○	
		3132 당기운영차액	○	○	○	운영수익 총계-운영비용 합계-각종적립금 대체액+운영차액 대체액(기본금 대체액을 각종적립금 대체액으로 변경)
비용 총계			○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비용 총계는 운영수입 총계와 일치해야 함.